

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광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9월 17일

발 의 자 : 김광수, 김제리, 김경영, 송명화  
최정순, 이광성, 유정희, 김태수  
김기덕, 김정환, 장상기, 이광호  
김용연 의원(13명)

## 1. 제안 이유

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·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,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함.

## 2. 주요 골자

가.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(안 제1조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가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위반 행위 등으로 명시함(안 제22조)

다.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주체들이 대기질 개선, 자원순환, 신·재생에너지 보급

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 
적극 협력하도록 함(안 제24조의2)

라. 대기 항목 측정방법 삭제 및 PM-2.5 농도기준 추가(안 별표 1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 조치 :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추진함으로써”를 “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우려가 있는 행위”를 “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)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, 보조금 등의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, 사업자, 단체,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, 자원순환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〈별지〉

### [별표 1] 환경기준(제14조 관련)

#### 1. 대기

항 목	기 준
아황산가스(SO <sub>2</sub> )	연간 평균치 0.01ppm 이하
	24시간 평균치 0.04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0.12ppm 이하
일산화탄소(CO)	8시간 평균치 9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
이산화질소(NO <sub>2</sub> )	연간 평균치 0.03ppm 이하
	24시간 평균치 0.06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0.10ppm 이하
미세먼지(PM-10)	연간 평균치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	24시간 평균치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미세먼지(PM-2.5)	연간 평균치 1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	24시간 평균치 3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오존(O <sub>3</sub> )	8시간 평균치 0.06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0.10ppm 이하
납(Pb)	연간 평균치 0.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벤젠	연간 평균치 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
비고 :

1.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(千分位數)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,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2. 미세먼지(PM-10)는 입자의 크기가 10 $\mu\text{m}$ 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.
3. 미세먼지(PM-2.5)는 입자의 크기가 2.5 $\mu\text{m}$ 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, 서울특별시·자치구·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<u>추진함으로써</u>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추진하고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함으로써</u> ----- ----- --.</p>
<p>제22조(규제조치)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<u>우려가 있는 행위</u>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22조(규제조치) ----- ----- ----- <u>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</u> ----- -----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4조의2(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)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, 보조금 등의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, 사업자, 단체,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, 자원순환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

【별표 1】 환경기준

1. 대기

항 목	기 준	측 정 방 법
아황산가스 (SO <sub>2</sub> )	연간 평균치 0.01ppm 이하	자외선형광법 (Pulse U.V Fluorescence Method)
	24시간 평균치 0.04ppm 이하	
	1시간 평균치 0.12ppm 이하	
일산화탄소 (CO)	8시간 평균치 9ppm 이하	비분산적외선분석법 (Non-Dispersive Infrared Method)
	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	
이산화질소 (NO <sub>2</sub> )	연간 평균치 0.03ppm 이하	화학발광법 (Chemiluminescent Method)
	24시간 평균치 0.06ppm 이하	
	1시간 평균치 0.10ppm 이하	
미세먼지 (PM-10)	연간 평균치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	베타선흡수법 ( $\beta$ -Ray Absorption Method)
	24시간 평균치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	
오존 (O <sub>3</sub> )	8시간 평균치 0.06ppm 이하	자외선광도법 (U.V Photometric Method)
	1시간 평균치 0.10ppm 이하	
납 (Pb)	연간 평균치 0.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	원자흡광광도법 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)
벤젠	연간 평균치 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	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(Gas Chromatography)

비고 :

- 1시간, 8시간,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$\mu\text{m}$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.

【별표 1】 환경기준

1. 대기

항 목	기 준
아황산가스 (SO <sub>2</sub> )	연간 평균치 0.01ppm 이하
	24시간 평균치 0.04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0.12ppm 이하
일산화탄소 (CO)	8시간 평균치 9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
이산화질소 (NO <sub>2</sub> )	연간 평균치 0.03ppm 이하
	24시간 평균치 0.06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0.10ppm 이하
미세먼지 (PM-10)	연간 평균치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	24시간 평균치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미세먼지 (PM-2.5)	연간 평균치 1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	24시간 평균치 3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오존 (O <sub>3</sub> )	8시간 평균치 0.06ppm 이하
	1시간 평균치 0.10ppm 이하
납 (Pb)	연간 평균치 0.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벤젠	연간 평균치 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
비고 :

-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(千分位數)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,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미세먼지(PM-10)는 입자의 크기가 10 $\mu\text{m}$ 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.
- 미세먼지(PM-2.5)는 입자의 크기가 2.5 $\mu\text{m}$ 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.